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408
번호	

제출년월일 : 1998.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정년을 연장할수 있는 규정을 삭제

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 할수 있는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6월이상"에서 "복무조례상 법정휴가기간이상"으로 축소

다. 별정직 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

라. 정년단축, 근무상한연령 연장자, 신체·정신상의 장애에 의한 직권면직 등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신설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이상”을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 ②(생략) ③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 연장신청기간 절차 및 신청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 연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삭제>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직권면직) ----- ----- ----- 1. ----- 파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 ----- 2. ~ 4.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u>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u>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u>
1. ~ 2. (생략)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u>
 <u><신설></u>	<u>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u> <u>②제11조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 을 명하여야 한다.</u> <u>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는 휴직기간으로 본다.</u>